

정부 양돈업 허가지침 개정 고시

농수산부 고시 제 86-23호

축산법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5항,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양돈업 허가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·고시한다.

1986. 8. 5.

농 수 산 부 장 관

양돈업허가지침

제 1 조 (목적) 이 지침은 축산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 제2항인 규정에 의하여 모돈 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양돈업을 허가함에 있어 법 제1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한에 필요한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허가의 상한규모) ① 양돈업외 허가는 영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모돈(이하 “모돈”이라 한다) 1,000두 이내로 한다. 다만, 모돈 1,000두를 초과하는 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1. 수출돼지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모돈, 이경우에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년도 상반기의 돼지고기 수출실적 200kg 당(정육기준) 1 두로 환산 적용하여 당해년도 하반기와 차년도 상반기중의 초과사육 허가두수를 신청한다.

2. 호당 사육규모 300두 이내의 농가와 개별화하여 돼지를 생산하고자 사육하는 모돈. 이 경우에 초과사육이 허가된 모돈 두당 연간 13두의 자돈을 계열농가에 공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사육이 허가된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비육돈이 사육목적 이외의 용도로 출하된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육 부과금을 부과한다.

제 3 조 (사육두수의 감축) 양돈업의 허가 신청 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한규모를 초과하여 모돈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조의 허가상한 규모이하로 제한하여 이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허가두수 이하로 감축케 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허가신청인의 동일인 의제등) 양돈업을 등록했거나 허가를 받은자(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타인 또는 관련법인 명의로 양돈업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이를 동일인 소유의 동일 양돈장으로 간주하여 법 제13조의 2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한 규모를 제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, 이경우 허가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에서의 사육두수확인, 사육조절, 감축명령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조치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5 조 (신규 허가의 제한) 양돈업의 신규허가는 1984년 12월 가축통계조사 결과의 당해 시도의 전체 모돈수에 대한 허가대상두수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, 1984년 12월 현재 허가대상이 없는 시·도에서는 전체 모돈두수대비 증가두수의 10% 범위내에서 양돈업을 신규로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